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문물연구원의 『문물』 학술연구 및 연구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진정한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저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마치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2.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주장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저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기타)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 간행되는 『문물』 제1호 부터 적용한다.